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

SMART 2030

| | | |
|---|---|---|
| **수** | **신** | **회원병원장** |
| **참** | **조** | **응급의료(기획)부서장** |
| **제** | **목** | **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** |

---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161호(2026.2.27.)

2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이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[붙임2] 양식을 작성하여 **2026.3.20.(금)까지 본회 정책국(E-mail: law@kha.or.kr)으로 제출** 바랍니다.

**가. 응급의료 실태조사 내용 등 규정**(안 제5조의2 신설)

-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행태 관련 사항,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·장비·인력 현황 등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

**나.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는 정보 항목 및 절차 규정**(안 제18조의2 신설)

- 사용 가능 병상 수 및 장비현황, 응급의료 제공 인력 현황,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사유, 중증응급질환 수술·처치 가능 현황 등 통보

**다.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의 기준, 운영방식 및 관리사항 규정**(안 제39조의3 신설)

-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·운영 시 준수사항(24시간 상시 수·발신, 기록·보존 등) 마련
-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
-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반영

**라.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 신설, 인력·시설기준 등 지정 기준 강화**(안 별표 5의2 및 별표 7)

- 권역·지역센터 각각 **응급실 진료**(기도처치, 호흡처치, 순환처치 등) 및 **의료기관 진료**(주요 수·시술 역량 및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진료역량) 기준 신설 등

- 응급실 전담전문의 기준 상향[지역],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상향, 간호사 인력 기준 상향,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 상향[권역] 등
- 응급전용 수술실·회의실·보호자 대기실 기준 완화[권역], 응급전용 입원병상 및 중환자 병상 규정 신설[지역] 등

붙임 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2. 검토서 양식

※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차장 김영진 팀장 유소영 국장 장은혜 사무총장 박혜경 상근부회장 노홍인
시 행 :정책 제 2026-80 ( 2026.03.03 )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전화 02-705-9235 전송 02-705-9219 ( 대표FAX : 02-705-9219 ) E-mail : yjkim@kha.or.kr